

KOLAS 공인시험기관 정지 공고

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(시험·검사기관 인정 등)와 「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」 제29조(인정 취소 등)의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정지를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09일

한 국 인 정 기 구 장

1. 공고대상기관

인정 번호	기 관 명	법인등록 번호	사업장소재지	유효기간	정지 분야 및 기간
KT447	한국농기계공업 협동조합	116250 -0000874	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자1길 180	2018-07-23 ~ 2022-07-22	전 분야 6개월 인정정지 (2020.11.09. ~ 2021.05.08.)

2. 공고방법 : KOLAS 홈페이지(www.knab.go.kr/kolas)

부칙 :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. 끝.